

# “동반자를 먼저 생각하는 현장중심 기업 IBK서비스”

【기안 대리 정지남 ☎ 02-2248-7690】

수 신 전 직원

2021. 06. 10.

제 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백신 접종 휴가지침

## □ 배 경

- 「코로나19」백신 접종 시 공가(유급휴가) 부여를 통한 직원 건강권 보호  
※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, 중앙사고수습본부 「백신휴가 활성화 방안」 지침

## □ 주요내용

- (휴가종류 및 일수) 공가 / 최대 2일(1+1)

구분	내 용	비고(필요서류 등)
접종 관련	· 공가 1일(접종 당일) - 이상반응 유·무 관계없이 신청을 통해 부여	접종확인서
이상반응* 발생시	· 공가 1일(D+1일) - 공가 1일 사용 후에도 이상반응 지속 시, 공가 1일 추가 부여	별도 증빙서류 (진단서 등) 無

\*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

- (휴가신청) 본사담당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신청  
- 휴가신청서 상 “백신접종” 필수 기재\*  
\* 이상반응으로 D+1일 공가 사용시 “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” 문구 기재
- (유의사항) 접종 당일·D+1일이 휴일인 경우, 익영업일 추가 휴가 없음

√ (예시) 6월 19일(토) 백신 접종시, 접종 당일/D+1일은 주말(토·일) [영업일 기준 아님]  
⇒ 6월 21일(월) (D+2일) 추가 공가 부여 없음  
- 단, 이상반응 발생으로 6월 21일(월) 및 그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경우  
연차 사용 가능

□ 시행일 : `21. 6. 10.(목)

## □ 기타사항

- 본 지침 시행 이전, 개인휴가를 사용하여 백신을 접종한 직원은 기존 제출한 휴가 근태 중 1일을 “공가”로 수정(개인휴가 → 공가)
-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2회 전부 본 지침 적용

대 표 이 사